

『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에 대한 제안 설명

- 존경하는 도문열 위원장님!
그리고 선배·동료 위원님 여러분!
안녕하십니까?
국민의힘 구로구 제1선거구 출신 서상열입니다.

- 본 위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724호
「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한 제안
설명을 드리겠습니다.

- 작년 3월, 「청년기본법」이 모든 위원회에 청년을 의무위
촉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청년 의무위촉 위원회를 별도로 지
정하는 현행 「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」를 상위법에 부
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.

- 다음으로 청년 위촉의무 위원회가 모든 위원회로 확대됨
에 따라 청년친화위원회의 명칭이 불필요해져 청년친화위
원회의 정의를 삭제하고

- 서울시 위원회 구성 시 위촉직 위원의 1/10 이상을 청년

으로 위촉,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촉직 위원의 3/10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도록 하고자 합니다.

- 또한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각종 위원회별 청년위촉 비율, 청년위촉이 곤란한 위원회의 범위, 위촉직 위원의 3/10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여야 하는 위원회의 범위 등을 심의·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했습니다.
- 마지막으로 청년인재정보 수집·관리 부서가 타부서로부터 인재추천 요청을 받았을 때 원활하게 협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.
-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주시기 바라며, 앞서 말씀드린 제안 취지를 감안하셔서 아무쪼록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